

화물자동차

[] 운송사업

[] 운송주선사업

[] 운송가맹사업

[] 휴업신고서

[]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업·폐업 내용	사업의 종류		
	휴업 예정 기간 : . . .부터 . . .까지(년 월)		
	폐업 일 : . . .		
	휴업·폐업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부서)